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 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물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52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27.
3.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및 제5호).

Ⅲ. 검토의견

현행법상 ① 동 법률 또는 동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¹⁾를 받거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²⁾를 할 수 없음.

개정안은 ① 동 법률 또는 동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와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의 결격사유를 수정함.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 ----- <u>실형을</u> ----- ----- <u>그 집행이 면제</u> <u>된 날로부터</u> ----- -----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u>금고 이상의 형의</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2016년 「형법」 개정 이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으나³⁾, 2016년 「형법」 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어⁴⁾ 집행유예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음.

3) 구 형법(법률 제7623호)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형법(법률 제13719호)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이 ① 동 법률 또는 동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관련 제조허가와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조허가와 제조신고의 대상이 되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조허가와 제조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상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음.

개정안은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와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의 결격사유를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제조허가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처분상의 불균형을 수정하는 것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의 실형보다 불이익하게 채우는 것은 과벌상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 해당 규정이 2014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으로⁵⁾ 2016년 「형법」 개정사항의 반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법률 제12300호, 2014.1.21. 일부개정

다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사람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6조제4호 후단은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관련 제조허가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사람⁶⁾에 대해서는 제조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편,

동조동호 전단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관련 제조허가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제조허가 또는 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개정안은 이를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임.

6)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불이익 처우 변화

구분		종전	'16 형법개정	개정안
벌금형	집행유예	제조업 허용 ⁷⁾	해당기간 제조업 불가	제조업 허용
	실형		제조업 허용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해당기간 제조업 불가 ⁸⁾	해당기간 제조업 불가	해당기간 제조업 불가
	실형	해당기간+2년간 제조업 불가	해당기간+2년간 제조업 불가	해당기간+2년간 제조업 불가

이는 불이익처우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행형실무에 있어서 가석방 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는 경우⁹⁾와 같이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것은 아니나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점,

7) 개정된 형법에 따르는 경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불가

8)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도과하지 않은 사람과 관련하여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 존재

9)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¹⁰⁾, 「모자보건법」¹¹⁾, 「골재채취법」¹²⁾ 등 여러 입법례에서 관련 허가 등의 결격사유로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 외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 규정에도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0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생략)

3. 이 법이나 「약사법」·「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생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2) 골재채취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생략)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